



# 새로운 법률 문서 및 주요 세금 정책 업데이트

2025년 6월

이번 뉴스레터에서 Grant Thornton Vietnam은 최근에  
제정된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법률 정책과 주목할  
만한 지침 사항들을 고객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고자 합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시행령 제123/2020/NĐ-CP를 보완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를 공포하였으며, 이는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고,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1. 납세자 관련 내용 그룹 - 투명성 제고, 납세자 편의 제공, 절차 간소화

### 1.1.1. 적용 대상(제2조):

시행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받는 대상에 다음과 같은 주체를 추가합니다:

“베트남에 상설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며, 본 시행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자발적으로 등록한 외국 공급자” .

이들은 부가가치세 계산서 유형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Google, Facebook, LinkedIn 등과 같이 베트남에 상설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2. 세금계산서 유형 (제8조)

1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활동 기업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에 재화를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 방식으로 세무 당국에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는 본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무 당국이 규정한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수출자가 전자 방식으로 세무 당국에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는 전자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전자 판매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수출가공기업의 세금계산서 유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출가공기업이 수출가공활동 이외의 기타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직접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서 사용 활동 추가:

dd)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 공급자가 수행하고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활동 및 기타 서비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3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제9조)

1

수출 재화(수출가공품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추가

(전자상거래 상업계산서 또는 전자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전자 판매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발행하는 경우):

판매자가 발행 시점을 결정하되, 해당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라 통관이 완료된 날의 다음 근무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제1항).

2

시행령 제123/2020/NĐ-CP 제9조 제4항 g호 삭제:

소매업체 및 식음료 매장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모든 영업 활동이 본사에서 기록되는 경우 매일 말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일 또는 매월 말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규정 삭제:

은행, 증권, 보험, 전자지갑 송금 서비스 또는 전기공급 중단 및 재개 서비스가 비영리 개인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4

택시 요금 산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택시를 통한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한 규정 개정:

운송 종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데이터는 세무 당국에 전송해야 합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4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제10조)

구매자 정보 항목 보완:

기존의 이름, 주소, 세금코드 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가예산과 관련된 단위의 코드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화 및 서비스 명칭 관련 보완 사항:

음식 및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음식 및 음료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차량 번호판과 운행 구간(출발지 - 도착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또는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송된 물품의 명칭, 발송인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 또는 식별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4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제10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전자서명의 날짜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 추가:

전자서명의 날짜 및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로 전송되는 날짜(인증세금계산서의 경우 인증코드 발급을 위한 전송일 / 비인증세금계산서의 경우 데이터 전송일)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시행령 제22조 제3항 a. 1호에서 규정한 데이터시트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판매자의 세금 신고일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며,

구매자의 세금 신고일은 정상 형식과 충분한 정보를 갖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기존 규정보다 명확한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발행일과 서명일이 다를 경우 세금 신고일은 발행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구매자 측 신고일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이전보다 명확해졌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로 다른 세금 신고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4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제10조)

전자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비영리 개인 소비자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다음 정보들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자의 성명, 주소, 세금  
코드, 구매자의 전자서명



참고로 현재 시행령  
제123/2020/NĐ-CP에서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명칭, 서식  
코드, 세금계산서 코드,  
세금계산서 번호, 판매자  
서명, 부가가치세율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5 PO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11조)



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전자 데이터를 세무당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연결기능이 있는 POS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다음과 같은 자를 추가합니다:

-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연간 매출 10억 VND 이상인 가업체(hộ kinh doanh) 또는 개인사업자(cá nhân kinh doanh)
-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90조 제2항, 제91조 제3항에 명시된 자
-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 (예: 쇼핑몰, 슈퍼마켓, 소매업체 (자동차, 오토바이, 기타 차량 제외), 식음료점, 레스토랑, 호텔, 여객운송,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예술/오락/영화/기타 개인 서비스 등 - 베트남 산업분류기준에 명시된 업종)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6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교체 (제19조)

세무서에서 인증코드를 부여받았으나 아직 구매자에게 발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합니다.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또는 교체하기 전, 구매자가 기업, 경제조직, 기타 조직,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잘못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거나 판매자의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 제123/2020/NĐ-CP는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서면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1.1.6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교체 (제19조)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월 내에 잘못 발행된 여러 전자세금계산서를 하나의 수정 또는 교체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세무서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무당국은 판매자에게 통보하며, 판매자는 세무당국의 통지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정 및 교체 세금계산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추가 (제5항):

d) 본 조 제1항 b호의 경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교체할 경우, 판매자 및 구매자는 해당 오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 기간에 이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dd) 본 조 제4항의 경우에 발행된 수정 세금계산서는 판매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에,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기간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D-CP

## 1.2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및 사용 중단

###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및 등록 내용 변경 (제15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 (제1항):

- 국세청 웹포털은 기업 등록, 세무 등록 DB 및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신원인증 시스템과의 정보 일치 여부를 등록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자동 검증합니다.
-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웹포털은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자동 발송하며, 불일치 항목을 명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거나 경찰청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국세청 웹포털은 등록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 사업자 또는 가업체 대표자에게 정보 확인 요청을 자동 전송합니다.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

##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및 등록 내용 변경 (제15조)

- 납세자는 해당 요청을 같은 영업일 내 또는 다음 영업일 말까지 확인해야 하며, 기한 내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해당 신청 건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자동 통지를 같은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 말까지 발송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추가 설명 또는 서류 요청 또는 사업장 방문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 기업 또는 조직의 법정대리인, 가업체의 대표자, 개인사업자가 이미 다른 조직이나 사업장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 중인 경우
  - 사업장이 등록된 주소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을 중단했으나 세무코드 말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세무 관련 법규(세금, 세금계산서, 문서 등)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고위험 납세자로 분류된 경우





## 1.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70/2025/ND-CP

###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및 등록 내용 변경 (제15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제4항) :

- 대표자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절차는 최초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기타 등록 정보 변경 시, 국세청 전자정보포털은 세무 등록서류에 기재된 대표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요청을 발송합니다 (제15조 제4항 a, b호).

## 2. 재무부령 제31/2025/TT-BTC (2025년 5월 31일자)

2021년 3월 30일 자 재무부령 제23/2021/TT-BTC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전자 스탬프 인쇄, 발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재무부령 제31/2025/TT-BTC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세무 당국으로부터 전자 담배 스탬프 또는 전자 주류 스탬프를 구매할 때 서류 절차 생략
- 2 조직 또는 개인이 생산 부서에 스탬프를 발행할 경우, 스탬프 상자, 스탬프 블록 또는 스탬프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자 스탬프 관리 시스템과 연결 및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3 재무부령 제23/2021/TT-BTC에 따른 서식 번호 02/TEM, 04/TEM, 07/TEM을 폐지하고, 재무부령 제31/2025/TT-BTC에서 발행된 새로운 02/TEM, 04/TEM, 07/TEM 양식으로 대체
- 4 서식 번호 03/TEM 및 05/TEM은 폐지





### 3. 재무부령 제32/2025/TT-BTC – 재무부령 제78/2021/TT-BTC (2021년 9월 17일자) 대체

재무부령 제32호는 가업체 및 개인사업자의 PO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업체 및 개인사업자(시행령 제70/2025/NĐ-CP 제1조 제8항에 명시된 바에 따름)는, 세무 당국의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수리일로부터 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을 완료한 경우, 기존 방식대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가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위 규정 준수를 위해 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속히 구매 및 확보해야 합니다.

## 4. 세무국 공문 제72/CD-CT – 재무부령 제31호 및 제32호 관련 시행 요청

2025년 6월 1일, 세무국은 공문 제72/CD-CT를 발송하여

지역세무국장, 전자상거래세무국장, 대기업세무국장에게 2025년 5월 31일 자로 발행된 재무부령 제31호 및 제32호의 신속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 공문에는 재무부령 제31호 및 제32호 모두가 2025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무부령 제32/2025/TT-BTC는 2021년 9월 17일 자 재무부령 제78/2021/TT-BTC를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기관은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자 원천징수영수증의 사용을 중단하고, 2025년 3월 20일 자로 정부가 발행한 시행령 제70/2025/NĐ-CP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전자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 공문은 재무부령 제31호 및 제32호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5. 재무부 공문 제4525/BTC-PC (2025년 4월 9일자)

행정 구역 변경 시 투자 인센티브 판단 및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에 대한 지침

- ❖ 2025년 4월 9일, 재무부는 \*\*공문 제4525/BTC-PC(이하 ‘공문 4525’)\*\*를 발행하여, 베트남 내 물리적 행정 경계 조정 상황에서의 투자 인센티브 판단 및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 투자 인센티브 지역 판단 관련

이미 투자정책 승인을 받았거나, 투자등록증(IRC)이 발급된 프로젝트의 경우

- 공문 4525는 법률 변경 시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이는 투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1/2021/ND-CP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 본 공문은 위치 기반 인센티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인센티브는 투자정책 승인 결정 및 투자등록증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 따라서, 행정 경계 조정 및 개편으로 새로운 행정 단위가 설립된 경우에도, 해당 투자 프로젝트는 기존에 결정된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계속 유지합니다.

###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제안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위치 조정이 있는 경우

새롭게 설립된 행정 단위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역에 속하는 여러 개의 커뮤니(communes)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판단 규칙이 적용됩니다:

- 새로 설립된 행정 단위는 구성된 커뮤니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우대지역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극히 어려운 지역(communes in extremely difficult areas)과 어려운 지역(difficult areas)의 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 신설 행정 단위는 극히 어려운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 어려운 지역과 비우대 지역(non-preferential areas)의 커뮤니 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 신설 행정 단위는 어려운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 극히 어려운 지역과 비우대 지역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동일 수라면 신설 단위는 극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즉, 극히 어려운 사회·경제 지역과 비우대 지역의 커뮤니 수가 동일한 경우, 해당 신설 단위는 극히 어려운 사회·경제 지역으로 인정됩니다.

## 5. 재무부 공문 제4525/BTC-PC (2025년 4월 9일자)

### ❖ 투자 프로젝트 조정 관련

투자법 및 시행령 제31/2021/NĐ-CP는 행정구역 변경 시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문 4525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정책 승인을 받았거나 투자등록증이 발급된 프로젝트의 경우,

- 투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1/2021/NĐ-CP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기존 승인 문서를 기준으로 계속 이행되어야 합니다.
- 만약 투자자가 프로젝트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일반적인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Contact

Please study the newly issued regulations and review the internal compliance procedur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customs tax as well as reduce errors in the process of filing and preparing documents that could lead to additional tax obligations or administrative penalty.

Please contact the experts of Grant Thornton Vietnam for in-depth advice if you have any inquir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ax and customs compliance

Please visit our **Tax Hub** to view more information

##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http://grantthornton.com.vn)



### Hoang Khoi

Senior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mailto:khoi.hoang@vn.gt.com)



###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mailto:ngan.bui@vn.gt.com)



### Hoang Viet Dung

Tax Director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mailto:dung.hoang@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mailto:valerie.teo@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mailto:thuphuong.nguyen@vn.gt.com)



### Dang Hai Ha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1

E [my.dang@vn.gt.com](mailto:my.dang@vn.gt.com)



###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mailto:tho.lac@vn.gt.com)



### Do Vu Bao Khanh

Tax and Transfer Pricing Director

D +84 28 3910 9277

E [khanh.do@vn.gt.com](mailto:khanh.do@vn.gt.com)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